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고용정책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6급 정원 12명을 5급 정원 12명으로 상향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상향 조정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12명(5급 12명)을 종전의 직급인 6급 12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 기정 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 00. ~ 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2항제5호 중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각각 “고용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8.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의 운영
9.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10. 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
1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위원회의 운영·지원
1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제8조제8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17.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18.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14조제6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의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 등에
관한 업무

제28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둔다.

별표 5 중 총계 “610”을 “617”로 하고, 일반직 계 “604”를 “611”로 하며, 행정사무관 “110”을 “114”로, 행정주사 “60”을 “6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전문경력관 나군 2” 밑에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총계 “629”를 “6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3”을 “63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30”을 “134”로, 행정주사 “54”를 “57”로,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전문경력관 나군 2” 밑에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담당) 1”을 신설한다.

별표 10 중 행정사무관 “197”을 “209”로, 행정주사 “987”을 “975”로 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평가기간
----	----	------

1) 산업안전감독	1명 (5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보험 실업급여	3명 (5급 2명, 6급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7항제7호에서 제12호 및 제14조제6항제19호의2, 같은조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0]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1. 제28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2. 제2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6월 29일까지)

총계	20
일반직 계	20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10
행정주사보	8

3. 제28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8월 8일까지)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

4. 제28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8월 8일까지)

총계	736
일반직 계	736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56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301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216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159
5. 제28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6. 제28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까지)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7. 제28조제8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4월 12일까지)	
총계	50
일반직 계	50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12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21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16
8. 제28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4월 12일까지)	
총계	53
일반직 계	53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7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8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15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23
9. 제28조제10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4월 12일까지)	
총계	29
일반직 계	29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0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19
10. 제28조제1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까지)	
총계	6
일반직 계	6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 보 또는 전산주사보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⑪ (생략)	제6조(고용정책실)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항</u>	5. ----- <u>보험료의 부과 · 징수 등</u> -----
6.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u>	6. <u>고용보험</u> ----- -----
7. 근로복지공단의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u>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7. ----- <u>고용보험</u> --- ----- ----- ---
8. 삭 제	
9. ~ 14. (생략)	9. ~ 14. (현행과 같음)
⑬ ~ ⑯ (생략)	⑬ ~ ⑯ (현행과 같음)
⑰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u>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u>
<u><신 설></u>	8. <u>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⑮ · ⑯ (생 략)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⑦ (생 략) ⑧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⑨ ~ ⑮ (생 략)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⑤ (생 략)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u>도의 운영</u> 9. <u>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운영</u> 10. <u>가사서비스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u> 11. <u>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위원회의 운영·지원</u> 12. <u>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u> ⑮ · ⑯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15. (현행과 같음) 16. <u>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u> 17. <u>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u> 18. <u>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u>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또

1. -----

---- 「임금채권보장법」,

는 「<u>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u>」 위반사건의 처리 2. ~ 20. (생략) ⑪ ~ ⑫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 ⑩ (생략) <u><신설></u>	「<u>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u>」, 또는 「<u>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u>」 ----- -- 2. ~ 20. (현행과 같음)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28조(한시정원)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u>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둔다.</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10</u>	<u>617</u>	+7
·	·	·	
·	·	·	
일반직 계	<u>604</u>	<u>611</u>	+7
·	·	·	
·	·	·	
행정사무관	<u>110</u>	<u>114</u>	+4
·	·	·	
·	·	·	
행정주사	<u>60</u>	<u>63</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	2	2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 담당)	<u><신설></u>	<u>1</u>	+1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9</u>	<u>636</u>	+7
•	•	•	
•	•	•	
일반직 계	<u>623</u>	<u>630</u>	+7
•	•	•	
•	•	•	
행정사무관	<u>130</u>	<u>134</u>	+4
•	•	•	
•	•	•	
행정주사	<u>54</u>	<u>57</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	•	•	
전문경력관 나군	2	2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 담당)	<신설>	<u>1</u>	+1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197</u>		<u>209</u>	+12	
	•		•		•		
	•		•		•		
행정주사			<u>987</u>		<u>975</u>	-12	
	•		•		•		
	•		•		•		